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2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최기찬, 김경훈,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인제,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송도호, 신복자,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인,  
,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홍국표 의원(32  
명)

## 1. 제안이유

- 노인 인구의 증가 추이에 따라 노인의 성 관련 문제도 점증하고 있음 .
- 특히, 노인 성범죄의 경우 대상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범죄의 실태파악 및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현실임.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한 성 문화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의 건강증진 추진의무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시장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 사항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가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 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진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u>&lt;신   설&gt;</u></p> <p>6. ~ 8. (생   략)</p> <p>② (생   략)</p> <p>제15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 ① (생   략)</p>	<p>제7조(건강증진)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노인 성인식 개선사업</u></p> <p>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현 행 제1항과 같음)</p>